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06.16 (목) 16:00

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5월 20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8일

3. 제안 이유

○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(안 제3조)

나.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(안 제4조, 안 제5조)

다.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(안 제6조, 안 제7조)

라. 식생활교육의 지원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